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6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허영·문진석·김남근
박상혁·박홍배·김동아
위성곤·허종식·박용갑
김태선·정준호·주철현
소병훈·박지원·장철민
맹성규·김병기·박수현
김승원·김준혁·부승찬
진성준·서삼석·최혁진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장의2(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사회적대화

제126조의2(사회적대화위원회) ①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 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③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를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운영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처리)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그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에 그 내용·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그 의결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의 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27조의3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장의 직무) (생 략)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 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 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 여를 촉진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9장의2 사회적대화</u>
<u><신 설></u>	<u>제126조의2(사회적대화위원회) ①</u> <u>사회 · 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 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 의 협의 · 합의 · 갈등조정을 위 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u>
	<u>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u>
	<u>③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 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 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 를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 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u>

<신 설>

④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운영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 조직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처리)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그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에 그 내용·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그 의결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의 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27조의3을 준용한다.